#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318

발의연월일: 2021. 11. 15.

발 의 자:서영교·강병원·강훈식

김교흥 · 김성주 · 김수흥

김영호 · 김윤덕 · 김정호

김종민 · 김주영 · 김철민

김한정 · 김회재 · 문정복

문진석 • 민병덕 • 백혜련

변재일 · 서삼석 · 송갑석

송기헌 · 송영길 · 송재호

신영대 · 안규백 · 안호영

양경숙 • 어기구 • 오기형

오영화 · 오영훈 · 유동수

유정주 • 윤재갑 • 윤준병

이병훈 • 이성만 • 이수진

이수진(비) · 이용빈 · 이용호

이원욱 • 이장섭 • 이철규

이학영 · 임종성 · 임호선

전용기 · 전혜숙 · 정청래

천준호 • 한병도 • 허 영

노웅래 • 권인숙 • 고영인

윤영덕 • 위성곤 • 김원이

조오섭 • 기동민 • 조승래

강선우 · 고용진 · 우상호

최인호 · 윤호중 · 윤후덕 맹성규 · 김경협 · 서영석 강준현 · 소병훈 · 박찬대 김진표 · 신현영 · 최종윤 윤건영 · 도종환 · 박성준 민형배 · 정태호 · 김민철 이개호 · 홍정민 · 이탄희 홍기원 · 설 훈 의원 (89인)

#### 제안이유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으로 인한 수도권 인구의 비수도권 인구 초과, 세계 최저의 출산율로 인한 심각한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 가임 (可姓) 여성의 인구 수(數)가 고령자 수의 절반 미만 등의 위기 지역인 지방소멸 위험지역의 급격한 증가, 수도권으로의 경제·교육·문화 등의 집중과 지방경제의 침체 등으로 인하여, 2016년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바뀌면서 향후 30년 내에 40%가 넘는 지방이 소멸될 수 있을 정도로 지방은 현실적으로 매우 큰 위기에 직면해 있음.

그러나 그동안 국가적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수립·시행해 온 수많은 농어촌 지원과 저출산·고령화 등 관련 정책이 그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정책 간 시너지 효과도 많이 부족했으며, 그 결과 개인과 기업 등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결정을 하게 될 현실적인 유인(誘因)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도권으로의 집중

요인이 증가하여 인구 집중도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임.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일반국민과 기업 등 모든 주체가 이러한 국가적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적으로는 물론 경제적·사회적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특단의 입법정책적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음.

이제 지방소멸은, 어느 한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대도시와 수도권의 위기로서, 지금 단계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궁극적으로는 국가 공멸(共滅)로 갈 수 있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린 국가적인 문제가 되었음.

따라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실효성이 높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국가전략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그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소멸에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민관 합동 지방소멸대응국가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함.

또한,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을 지정하여, 개인·기업과 학교 등의 지방이전, 창업 및 기업 활동, 사회복지, 교육과 문화·관광·레저·체육 등부문에서의 특별한 지원이 가능한 강화된 특례 규정과 특단의 세제및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에서 거주하고 기업활동을 하고 싶을 정도의 확실한 수준까지 특별한 지원 등을 하는 여러정책적 방안들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면서도 현실에 맞게 실행되어지방소멸의 국가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지방소멸대응국가전략계획과 그 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1)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방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와 지방소멸대응국가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지방소멸대응국가전략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 (2) 국가전략계획의 각 부문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 계획수립권자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소멸 대응국가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지방소멸 대응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전략계획에 따라 5년마다 지방소멸대응 지방자치단체 전략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그 전략계획에 따라 매년 각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 나. 지방소멸대응국가특별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 운영 등(안 제11조)
  - (1) 지방소멸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특별한 조치 등에 관한 중요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소멸대응국가특별위원회를 두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 (2) 국가특별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경제 등분야에서 영향력이 있는 위원(정부 주요 경제부처 장관 등, 경제단체 및 노동단체의 장, 전국 단위 시도민회 연합단체의 장 등과관련 전문가)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관련 학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됨.
- 다.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의 지정과 지방이전 법인 등의 관리계획 입안 제안(안 제14조 및 제15조)
  - (1)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는 지방소멸 위기의 정도를 계량화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지방소멸위험지수를 고려할 때 지방소멸의 위험이 상당할 정도로 높다고 인정되어 지방소멸의 위기에 특별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의 시·군·구에 대하여는 국가특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 지정함.
  - (2) 시장·군수·구청장도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지방자치 단체로 지방이전하려는 법인도 그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기업 등이 계획적·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라. 지방이전 종합정보지원센터의 지정 등(안 제16조)
  - (1)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이전 및 정착에 관한 정보의 제공, 지방 이전 및 정착과 지방에서의 경제·문화

- 등의 활동을 위한 지원, 관련 정보의 제공과 지원 등을 위한 교육 ·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지방이전 종합정보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이전 종합정보지원센터의 사업 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마.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 내 거주 목적의 주택 취득이나 이전 시양도소득세, 취득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감면(안 제17조 및 제18조)
  - (1)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한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 세대가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 내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한 채이상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 채의 주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취득하는 한 채의 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함.
  - (2) 거주할 목적으로 지방이전하는 경우로서 지방이전 후 정착할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상속 또는 증여를 받는 경우나 지방이전 후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상속 받거나 매입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면함.

바.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서의 기초연금 지원 특례(안 제20조)

- (1) 국가는 「기초연금법」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서는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을 전부 부담함.
- (2) 「기초연금법」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 내에서는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도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지 않도록 함.
- 사. 지방이전했거나 지방이전하는 사람에 대한 거주, 주택·택지 등 공급과 취업 및 출산 장려 등 지원(안 제20조)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이전했거나 지방이전한 사람의 정주 (定住)의 개선과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수 (改修)·보수(補修)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는 그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2)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 내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관련하여 조례 등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방법과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3) 국가전략계획권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유지 또는 공유지 등을 이용하여 도심 등 문화·예술과 의료 시설이나 체육 시설 등에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수도권으로부터 지방으로 이전했거나 지방이전하는 사람의 주거를 위한 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이경우 그 택지의 임대의무기간은 20년부터 50년까지로 할 수 있음.

-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이전했거나 지방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 생활 안정과 생업과 관련한 영업 등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출산장려금의 지급과 일자리·창업에 필요한 정보와 자금 등의 지원을 해야 함.
- 아. 기업의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의 지방이전과 투자에 대한 법인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감면, 가업상속에서의 요건 완화와 창업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 (1)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본점, 주사무소나 공장을 둔 내국법인이 본점, 주사무소나 공장을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 지방이전 하거나 그 지역에 투자 또는 창업한 경우에는 본점, 주사무소나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이나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나 지방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10년간 법인세 전액 감면 등)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면함.
  - (2)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 본점, 주사무소나 공장을 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소멸 위기특별지역으로 지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10년간 법인 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 (3) 그 상속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업상속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업상속의 요건을 완화하여 가업의 승계에 대하여 강화된 증여세 과세 특례가 인정되도록 하고,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에 대해서도 증여세 과세 특례가 인정되도록 함.

(4)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의 지방이전 기업에 대하여 「국유 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 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장 등의 부지 등의 조성에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등 부지 제공과 기반시설 조성의 특례와 지원 사항을 규정함.

#### 자. 지역거점 의료기관의 지정과 지원 등(안 제25조)

- (1)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 중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과 국가특별위원회에서 정하는 그 밖의 지역 내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민간보건의료기관을 지방에서 의료기관의 주요 거점(據點)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거점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 등과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거점 의료 기간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실질 적인 세제 혜택 등 지원과 간호인력의 확보를 위한 특례 사항을

규정하며,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본인일부부담금의 기본 부담률을 인하하는 등 대도시 대형병원으로의 쏠림을 막아 지역거점 의료기관을 살리고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주민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함.

- 차.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서의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과 특례(안 제27조)
  - (1)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서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 보험의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을 같은 법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보험료율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료율로 함.
  - (2) 정부는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 지방이전한 사람과 기업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하여 같은 법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 지방이전한 사람과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카. 대학 등의 교육시설의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 등으로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과 용도변경 등 특례(안 제28조)
  - (1)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 등이 대학 등의 교육시설을 수도권 밖의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 지방이전하기 위하여 그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의 관리 및 보호와

회계의 구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2) 대학 등의 교육시설을 수도권 밖의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 지방이전하는 경우 그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대학 등의 교육시설을 지방이전하기 전의 교육시설의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지구·구역 또는 구획 등의 특례를 규정할 수 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 등을 하도록 함.
- 타.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 관련 골프장에 대한 과세 특례(안 제34조)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 소재하는 골프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에 따른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 거주 주민에 대한 골프장의 입장요금의 인하계획 등을 제출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은골프장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가 특별히 감면되도록 함.
  -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 소재하는 골프장 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골프장에 지방소멸 위기특별지역 거주 주민의 입장행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를 면제함.
  - (3) 또한, 회원제골프장에 대해서만 지방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지방 세법령상 조세 형평상의 문제를 개선하여 골프 대중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지방이전 개인이 여유 있고 재미있는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 파.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교부 등에 대한 특례(안 제35조)
  - (1) 지방자치단체가 전략계획과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함.
  - (2)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에 대하여는 「지방 교부세법」에도 불구하고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교부할 수 있음.
  - (3)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에 대한 복권수익금의 배분 비율은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우대하여 정할 수 있음.

##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구의 심각한 감소 등으로 인하여 현실로 다가온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을 살리기 위하여 국가적인 대응체계의 구축과 강화된 특례 및 부문별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과 기업 등의 지방이전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며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여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2. "지방"이란 수도권 외의 지역을 말한다.
- 3. "지방소멸"이란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경제 집중,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지방경제의 침체 및 활력 저하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존속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태에이르게 되는 것을 말한다.

- 4.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란 제6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국가전략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
- 5.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가 지방소멸에 특별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지방의 시·군·구(시·군·구의 일부 지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위험지수를 고려하고 제11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국가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 6. "지방이전"이란 지방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하거나 사업 등 활동을 하기 위하여 수도권(「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진출기업이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국내복귀하는 경우에는 해외를 말한다)에서 지방으로, 또는 광역시에서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 개인이 「주민등록법」 제7조의3제1 항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옮기거나 법인(「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을 포함한다)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등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옮기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는 전국적 규모에서, 지방자 치단체는 해당 관할구역의 규모에서, 지방소멸의 위기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 등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고 현실적인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 · 추진해야 한다.

- 1. 지방소멸 문제의 현황 파악과 일반국민 및 기업과의 원활한 소통 에 기반한 다양한 정책의 마련과 추진
- 2. 지방소멸의 위기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수 (指數)의 개발과 실태조사
- 3. 개인과 기업 등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특단의 정책 개발 및 법제화와 이의 적극적인 시행
- 4. 개인과 기업 등의 자발적인 사업 재편 등 지방이전을 위하여 필 요한 사업상의 조치에 대한 특별한 지원
- 5. 지방 투자의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 중소도시의 재생을 위한 사업의 추진
- 6. 지방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불합리한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
- 7. 지방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얻으며 지방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 간의 교류를 확대하는 사업의 추진
- 8. 베이비부머 세대와 청년 세대의 지방이전, 공존과 지방에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 9. 지방이전한 사람이 지방에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거나 고향 등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주(定住) 여건의 마련, 사회복지·교육·문화 등 생활환경의 개선과 지역 인프라의 확충

- 10. 지방이전 및 정착과 관련한 정보의 정확하고 신속한 공개·제공 제4조(국민과 기업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국민은 지방이전과 정착을 통하여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추구할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국민은 지방이전 및 정착과 관련한 정보를 알 권리를 가진다.
  - ③ 일반국민과 기업은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시행 과정에 활발히 참여하고 마련된 시책에 대해서는 그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한다.
  - ④ 기업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관련하여 상생(相生)을 통한 기업의 성장과 발전이 가능한 경우 적 극적인 지방이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지방소멸 대응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이 법상의 조치보다 강화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규정이나 취지에 따라 개별 법령을 정비해야 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면 해당 개별 법령이 정비되기 전이 라도 이 법상 특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별 법령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해당 개별 법령 규정에 대한 특례를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③ 이 법에서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하도록하거나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관계 법령상의 해당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법령의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 ④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 지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에 맞도록 해야 한다.

제2장 지방소멸대응국가전략계획과 부문별 시행계획 등의 수립・시행 등

제6조(지방소멸대응국가전략계획과 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 ①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는 개인과 기업의 지방이전 및 정착을 지원하는 등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방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11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국가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지방소멸대응국가전략계획(이하 "국가전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국가전략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국가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 2. 지방소멸 위기의 현황과 전망
-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위험지수 등 지방소멸위기특별지 역의 지정을 위한 기준
- 4.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행정적·재정적·세제적 지원의 목표와 내용
- 5. 지방이전 개인의 주거 및 생활 지원과 경제적 위험, 건강 관련위험, 사회적 관계의 소멸 위험 등의 방지를 위한 맞춤형 대응 방안
- 6. 지방 의료기관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다음 각 목 등의 제도적 방안 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의 수급과 보수 및 근무 여건 개선
  - 나. 본인일부부담금의 지원과 요양급여비용의 지역 가산
  - 다. 지방 의료기관 근무를 위한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의 장학제도 도입
- 7. 지방이전 기업 등의 정착과 기업활동 등의 지원
- 8. 지방이전을 통한 베이비부머 세대와 청년 세대의 세대 간의 공존, 직업 분화, 공간적 분업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
- 9. 지방이전 대학 등 교육기관의 정착과 교육 관련 지원
- 10. 지방소멸 위기와 지방이전 관련 실태 조사
- 11. 지방소멸 대응 과정에서의 갈등 및 이해관계 조정과 지방자치 단체,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방안
- 12. 지방이전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
- 13. 지방소멸 대응의 필요성과 지방이전 관련 홍보

- 14. 지방이전 지원 등 지방소멸 대응 지원을 위한 재원(財源)의 조달과 배분 등의 방안
- 15. 지방 중소도시의 재생과 교통 중심지 등으로의 시설 등의 집중 적인 조성 등을 통한 지방살리기 사업의 추진 방안
- 16. 지방이전 관련 정보화 촉진과 정보시스템 구축
- 17. 그 밖에 지방소멸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국가전략계획의 각 부문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11조에 따른지방소멸대응국가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지방소멸대응 부문별 시행계획(이하 "부문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한다.
-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된 관계 법률에 따른 계획 또는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가전략계획과 그 부문별 시행계획의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
  - ② 국가전략계획과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등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다만, 국가전략계획과 부분별 시행계획에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 1.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시행계획
- 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 계획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 제8조(시·도 전략계획 및 시·군·구 전략계획과 그 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국가전략계획 등에 따라 5년마다 지방소멸대응 시·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전략계획(이하 "시·도 전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국가전략계획과 시·도 전략계획에 따라 5년마다 지방소멸 대응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략계획 (이하 "시·군·구 전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시·도 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국가전략계획 등에 따라 매년 지방소멸대응 시·도 부문별 시행계획(이하 "시·도 부문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전략계획과 시·도 전략계획 등에 따라 지방소멸대응 시·군·구 부문별 시행계획(이하 "시·군·구 부문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④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략계획 또는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군·구나 읍·면·동 등의 자치조직, 지역 공동체나 지역 대표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 ⑤ 시·도 전략계획과 시·군·구 전략계획, 시·도 부문별 시행계획과 시·군·구 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9조(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전략계획 등의 수립·변경과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 등 지방소멸 대응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등을 위하여 5년마다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지방소멸 대응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그 실태를 조사한다.
  - 1.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및 그 변화와 지역별 상황 등 제13조제1항 에 따른 지방소멸위험지수와 관련된 사항
  - 2. 지방의 경제 관련 상황과 환경
  - 3. 지방의 문화·복지·관광·레저·체육 등 관련 상황과 환경
  - 4. 그 밖에 지방소멸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 전략계획 또는 시·군·구 전략계획의 수립과 연계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등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그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거나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가 국가전략계획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가전략계획의 각 부문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 전략계획과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때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등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 1. 중앙행정기관의 장
- 2.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의 장
-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장
- 5. 그 밖에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기관·법 인 또는 단체의 장
- ④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협의하여 임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⑤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실태

- 조사를 할 때에는 개별법에 따라 실시한 관련 실태조사의 결과와 「통계법」에 따른 통계자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수렴된 결과는 공개하고 실태조사한 구체적인 정보와 자료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 국가전략계획과 그 부문별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전략계획과 그 부문별 계획, 그 밖의 지원 등의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 제10조(지방소멸 대응 관련 계획과 실적의 국회 제출) 정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 1. 국가전략계획
  - 2. 국가전략계획의 부문별 시행계획
  - 3. 국가전략계획의 전년도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한 실적

### 제3장 지방소멸 대응의 추진 체계 등

제11조(지방소멸대응국가특별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운영 등) ① 지방소멸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특별한 조치 등에 관한 중요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소멸대응국가특별위원회(이하 "국가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국가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조정한다.
- 1.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조정
- 2. 지방소멸 관련 지수의 개발 관리
- 3.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지방에서 제외되는 지역의 선정
- 4. 국가전략계획의 확정과 변경
- 5. 국가전략계획의 부문별 시행계획의 확정과 변경
- 6. 지방소멸 대응 시책과 사업의 발굴・조사・분석・평가・조정
- 7. 개인, 기업, 대학교 등의 지방이전과 그에 따른 세제 혜택
- 8.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의 지정과 지정 해제
- 9.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 지원 정책의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ㆍ평가
- 10.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 내에서의 공장입지 등 규제의 완화
- 11.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 관리계획의 입안 이 제안된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중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
- 12.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 발전
- 13. 지방 중소도시의 재생을 위한 사업 추진
- 14. 그 밖에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국가특별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

- 원으로 구성한다.
- ④ 국가특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1. 기획재정부장관
- 2 교육부장관
- 3. 행정안전부장관
-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7. 보건복지부장관
- 8. 국토교통부장관
- 9. 해양수산부장관
- 10.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1. 국무조정실장
- 12.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 1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 14.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 협의회·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관련 전문가 각 1명
- 15.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가 되는 정당에서 정책을 총 괄하는 위원회 등의 의장
- 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

- 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전국 단위 경제단체의 장과 그 경제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2.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장과 그 노동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3. 전국 단위의 시도민회 연합단체의 장과 그 연합단체가 추천한 사람
- 4. 인구감소 등 인구 구조와 지역경제 발전 등 지방소멸의 문제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와 실무계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
- ⑥ 제5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辭任)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⑦ 국가특별위원회의 간사는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가 공동으로 된다.
- ⑧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대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⑨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국가특별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한다.
- 1. 대통령이 소집을 요구할 때
-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③ 국가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 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국가특별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 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b) 국가특별위원회는 소관 업무 중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존속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⑰ 국가특별위원회의 사무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특별위원회 소속으로 지방소멸대응국가지원단을 둘 수 있다.

- ® 제17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국가지원단은 국가특별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연구소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 ① 국가특별위원회는 그 운영이나 지방소멸대응국가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 ② 제1항부터 제19항까지의 규정 외에 국가특별위원회, 분야별 소위 원회와 지방소멸대응국가지원단 등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소멸대응지방특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시·도지역혁신협의회 및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나 유사한 성격의다른 위원회로 하여금 지방소멸대응지방특별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지방소멸 대응 관계 법령의 입법에 대한 의견 제시와 개선 권고등) ① 국가특별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해당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

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이나 고시 등 행정규칙을 제정·폐지하거나 개정하도록 촉구한다.

- ② 국가특별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된 법령이나 고시 등 행정규칙을 제정·폐지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 등이나 관련 규정의 필요성과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합리적인 개정 등의 방안을 권고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제정·폐지나 개정(이하 이 항에서 "개정 등"이라한다)의 촉구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개정 등의 의견 제시 또는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가특별위원회의 개정 등의 촉구 사항이나 의견 또는 권고를 존중하여해당 법령 등이나 관련 규정의 개정 등을 추진해야 한다.
- 제13조(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의 지정 등) ①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는 직권으로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지방소멸 위기의 정도를 계량화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사항을 종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지수(이하 "지방소멸위험지수"라 한다)를 고려할 때 지방소멸의 위험이 상당할 정도로 높다고 인정되어 지방소멸의 위기에 특별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의 시·군·구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국가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

지정한다.

- 1. 연평균 인구증감률 및 인구밀도
- 2. 청년순이동률 및 주간인구(晝間人口)
- 3. 고령화 및 유소년 비율
- 4. 조출생률(組出生率)
- 5. 재정자립도
- 6. 그 밖에 지방소멸의 위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지방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이 지방소멸의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해당 지역을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 각 호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지방소멸의 위기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국가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 지정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구의 증가나 그 밖의 사유로 지방소멸의 위험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해당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소멸위기

특별지역의 해제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 ⑤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방소멸위기 특별지역을 지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 행정 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제14조(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 관리계획의 수립과 입안 제안 등) ① 국 가전략계획수립권자는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 관리계획(이 하 이 조에서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 1.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 관리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 2. 개인과 기업 등의 지방이전 촉진에 관한 사항
  - 3.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 4. 인구와 주택 등 공간 수용(受容) 계획에 관한 사항
  - 5.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지방이전하려는 기업 또는 대학 등 법인은 그 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전략계획수 립권자는 제안된 관리계획의 입안 사항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중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

가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③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는 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 시·도 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해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시 ·군·구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시 제18조에 따라 도시 · 군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④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 방소멸위기특별지역 관리계획의 수립과 입안 제안과 관련하여 「기 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의 제안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기업이 같은 법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례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획적・ 주도적으로 자족적인 기업도시가 개발·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 안을 강구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 세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
- 제15조(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서의 사회간접자본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 대하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설치·유지하거나 보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기반시설을 한 곳

- 에 모으는 형태의 복합화 사업을 통하여 설치하는 경우 국가는 이에 드는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도로법」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위기특별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도로의 건설에 관한 비용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대중교통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島嶼) 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민(島嶼民) 차량 등에 대하여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중교통에 취약한 지방의 농어촌 등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교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 ⑥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 주민의 건강,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비대면원격 시스템과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행정서비스가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그 기술을 개발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드는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있다.
- ①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 산 또는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

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지방소 멸위기특별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수익 또는 대부할 경우의 임대기간 과 임대료는 국유재산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16조(지방이전 종합정보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 ① 국가전략계획 수립권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이전하려는 개인, 기업과 대학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해야 한다.
  - 1. 지방이전 및 정착에 관한 통계와 세제 혜택 등 정보의 제공
  - 2. 지방이전 및 정착에 필요한 택지 등 부지의 공급에 관한 정보의 제공
  - 3. 지방에서의 보건·의료 등 복지, 교육, 문화 등 관련 정보의 제공 과 창업과 기업활동 등 경제 활동을 위한 지원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제공과 지원 등을 위한 상담·안내와 교육·훈련의 실시
  - 5. 그 밖에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이전 개인, 기업 대학 등의 정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 하는 업무
  - ②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관련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지방이전 종합정보지원센터(이

하 "종합정보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종합정보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전략 계획수립권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③ 종합정보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지방이전을 희망하는 개인, 기업이나 대학 등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 사업
- 2. 지방이전하는 개인의 창업과 경제활동 관련 지원 사업
- 3. 지방이전하는 개인의 택지 등 부지와 기업의 부지의 우선공급 사업
- 4. 개인과 기업 등의 지방이전 관련 조사, 홍보와 정책 발굴 등에 대한 사업
- 5. 그 밖에 개인, 기업이나 대학교 등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④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종합정보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 4. 종합정보지원센터가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 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경우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4항에 따라 종합정보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통 보해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종합정보지원센터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의 사업 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7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과 제2항에 따른 종합정보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개인의 지방이전과 생활 및 경제활동에서의 지원과 특례

제17조(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 내 거주 목적의 주택 취득 시의 양도소 득세,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감면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한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 세대가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 내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한 채 이상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 채의 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취득하는 한 채의 주택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 의 취득세를 감면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거주 목적의 1주택(「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계산에서, 「종합부동산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의 감면을 받은 후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부터 수도권 또는 광역시로 다시이주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법에 따라 감면 받은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법」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같은 법에 따라 감면 받은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한다.
- 제18조(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 내 거주 목적의 지방이전 시 상속세와 증여세의 감면) 국가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1세대가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 내에 거주할 목적으로 지방이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면한다.
  - 1. 지방이전 후 정착할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상속 또는 증여를 받는 경우
  - 2. 지방이전 후 농어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상속 받거나 매입하기 위하여 증여를 받는 경우
- 제19조(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서의 기초연금 지원 특례) ① 국가는

「기초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개인의 지방이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하게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기초연금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서는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도 각각의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 ③ 「기초연금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서는 국가가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한다.
- 제20조(지방이전하는 사람에 대한 거주, 주택·택지 등 공급과 취업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이전하거나 지방이전한 사람의 정주(定住) 여건의 개선과 주거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의 신청 자격, 방법 및 절차와 지역별 지원 수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존에 건축된 주택을 개수(改修)·보수(補修)하는 경우
  - 3.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 ②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 내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방법과 절차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③ 국가전략계획권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유지 또는 공유지 등을 이용하여 도심 등 문화·예술과 의료 시설이나 체육 시설 등에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지방이전했거나 지방이전하는 사람의 주거를 위한 택지를 우선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그 택지의 임대의무기간은 20년부터 50년까지로 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이전했거나 지방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 생활 안정과 생업과 관련한 영업 등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지원의 신청 자격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호에 따른 출산장려금의 지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1. 출산장려금의 지급
- 2. 직업 상담과 직업적성검사 등을 통한 능력과 소질에 맞는 적절한 직업의 안내와 취업의 알선
- 3. 일자리와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4. 창업에 필요한 자금, 기술과 컨설팅 지원

제5장 기업의 지방이전과 창업 및 기업활동에서의 지원과 특례

- 제21조(기업의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의 지방이전과 투자에 대한 법인세와 취득세의 감면 등) ① 수도권에 본점, 주사무소나 공장을 둔 내국법인이 본점, 주사무소나 공장을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 지방이전하기 위하여 본점, 주사무소나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한다.
  - ② 수도권에 본점, 주사무소나 공장을 둔 내국법인이 본점, 주사무소나 공장을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 지방이전하거나 그 지역에 투자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10년간 법인세 전액을 감면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전액을 감면한다.
  - ③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 본점, 주사무소나 공장을 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 지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10년간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제22조(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의 기업 지방이전 또는 창업 시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감면, 가업상속에서의 요건 완화와 증여세 과세특례) ① 국가는 수도권에 본점, 주사무소나 공장을 둔 내국법인이 본점, 주사무소나 공장을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 지방이전한 경

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면한다.

- ② 제1항에서의 상속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업상속의 요건을 완화하고 가업의 승계에 대하여 강화된 증여세 과세 특례가 인정되도록 한다.
- ③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창업자금에 대하여 강화된 증여세 과세 특례가 인정되도록 한다.
- 제23조(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의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부지 제공과 기반시설 조성의 특례와 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는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본점, 주사무소나 공장을 둔 내국법인이 본점, 주사무소나 공장을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 지방이전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에게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내국법인의 본점, 주사무소나 공장의 이전에 필요한 부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본점, 주사무소나 공장을 둔 내국법인이 본점, 주사무소나 공장을 지방소멸위기특별지 역으로 지방이전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

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국 법인에게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국법인은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본점, 주사무소나 공장을 둔 내국법인이 본점, 주사무소나 공장을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 지방이전하는 경우 공장 등의 부지 등의 조성에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제6장 건강ㆍ의료ㆍ연금 등 사회복지 부문에서의 지원과 특례

제24조(의료 시설과 의료인 확보 시책의 마련, 지역의료 대책의 강화와 지역우수병원의 지정·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의 보건의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설치와 의사및 간호사 등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을 확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에

서 응급, 심혈관과 뇌혈관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자원을 확충하는 등 지방소멸위기특별 지역의 보건의료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이 강 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 시설 및 인력과 의료서비스의 품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병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하고, 의료 시설 및 인력 확충과 의료서비스의 품질 향상 등에 드는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25조(지역거점 의료기관의 지정과 지원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 중 지방소멸위기특별 지역과 국가특별위원회에서 정하는 그 밖의 지역 내의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민간보건의료기관을, 지방에서 의료기관의 주요 거점(據點)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이하 "지역거점 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지역거점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거점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 등과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거점 의료기관과 지역거점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거점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인력과 관련한 등급과 간호사 수의 산정에서의특례(간호사 외에,「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인력을 최소 30퍼센트의 비중으로 포함하여 등급과 간호사 수를 산정하고 이를 진료수가에 가감하여 산정하는 등의 특례를 말한다)를 통한 같은 항에 따른 요양급여 기준 등에서의 우대
- 2.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등의 산정 시 지역거점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급여 비용의 특별 가산
- 3. 지역거점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우수 의료인를 확보하기 위한 세 제 혜택의 부여(지역거점 의료기관 근무 의료인 중 전문의의 소득 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 이상 의 소득공제를 하는 등의 실질적 혜택을 말한다)
- 4. 지역거점 의료기관에서의 간호인력 확보와 그 인건비 지원의 강화 ⑤ 지역거점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법 제3조의5에 따른 전문병원에 대한 지정 요건, 전문성과 진료의 난이도 등에 대한 평가와 「보건의료기본법」 제52조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등 의료질 평가에서 20

퍼센트 이상의 가산점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라 재정적 부문에서 우선적이고 특별한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

- ⑤ 지역거점 의료기관에서의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입원진료와 외래진료 등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본인일부부담금으로 한정한다)의 기본 부담률을 같은 조에 따른 기본 부담률의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
- ⑥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지역거점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한 지원 등의 방법 및 절차와 제5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기본 부담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 소재하거나 설립되는 병원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①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 소재하거나 설립되는 병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이 수도권 밖의 지방소멸위기특별 지역으로 지방이전한 경우에 적용하는 법인세 과세 특례에 준하여법인세 감면이 인정되도록 한다.
  - ③ 국가는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과 관련하여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 소재하 거나 설립되는 병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으로 산입하는 경우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29조제5항제4호의 요건을 제1항제1 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 제27조(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서의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과 특례) ①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서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의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료율로 한다.
  - ② 정부는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 지방이전한 사람과 기업의「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하여같은 법 제75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 지방이전한 사람과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대학 등의 지방이전과 교육 부문에서의 지원과 특례

제28조(대학 등의 교육시설의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과 용도변경 등 특례) ①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 등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교육시설(이하 "대학 등의 교육시설"이라 한다)을 수도권 밖의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 지방이전하기 위하여 그 대지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의 관리 및 보호와 회계의 구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대학 등의 교육시설을 수도권 밖의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 지방이전하는 경우 그 원활한 지방이전을 위하여 그지방이전 전의 대학 등의 교육시설의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19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 등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지구・구역 또는 구획 등의 특례를 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방이전 전의 대학 등의 교육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용도변경 등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재정적・세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
- 제29조(교육 여건 확보를 위한 교육시설 등 지원과 학교 신설 및 교육 재정 지원의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위기특별지 역에 대학 등의 교육시설이 적절히 설치되고 유치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 대학 등의 교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대학 등의 교육시설을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추가적인 세제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위기특

별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설립 기 준과 인가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 ④ 교육부장관은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등의 교육 시설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다.
- ⑤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등의 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지원 요건에 미달한 경우에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고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재정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 있는 학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평가를 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가점(加點)이 부여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 있는 학교를 우대하고 그에 따라 교육재정 등의 배정 등에서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
- 제30조(지방대학에 대한 특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 멸위기특별지역에 있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대학(이하 "지방대학"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지원보다 강화된 지 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서의 지방대학의

등록금과 관련한 지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도권 대학 등 학교 등록금의 60% 이하가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 1. 교원의 확보에 필요한 지원
- 2. 교육용 연구용 시설 설비의 확보에 필요한 지원
- 3. 실험실습비 · 연구조성비와 장학금 지급 등에 필요한 지원
- 4. 그 밖에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과 학술 또는 학문 연구를 진흥 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균형인재(지방대학의 학생이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중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 있는 지방대학의 학생이나 졸업생에게는 평가, 임용, 채용, 취업 또는 시험 등에서 관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점(加點)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지원 등이 더욱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
- 1. 해외교류 연수사업에서의 지원
- 2. 공무원 임용 기회의 부여
- 3. 공공기관 등에의 취업 기회의 부여
- 4.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교수 또는 연구원 등 채용에서의 우대
- 5. 대학 입학 기회의 부여
- ③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서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대학 등 학교와 등록금 등에 대한 지원 또는 보조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

- 제31조(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①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 교육부장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에서 각급학교, 민간 단체와 기업 등과 연계하여 교육의 정보화와 관련 평생교육과정의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 교육부장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에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평생교육 특성화 사업을 지원하여 그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을 활성화할 수 있다.
  - 1. 학습형 일자리 창출
  - 2. 고용과 복지의 연계
  - 3. 국가 시책과 연계한 지역 자원의 활용
  - 4. 해당 지역의 현안
  - ③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 교육부장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 내에서는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 특성화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며 그에 필요한 재정 등 지원을 해야 한다.

제8장 문화 · 관광 · 레저 · 체육 부문에서의 지원과 특례

제32조(문화·관광·레저·체육 시설에 대한 지원과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 대응 시책에 맞추어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문화·관광 등 시설"이라 한다)이 적절히 설치되고 유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1. 문화예술회관
- 2. 관광시설
- 3. 도서관
- 4. 박물관
- 5. 레저 · 체육 시설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휴토지(遊休土地) 등에 해당 지역의 주민과 지방이전한 사람들을 위한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이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③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역에 주소지를 둔 주민이 그 지역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료 또는 관람료 등의 50퍼센트 이상이 감면되도록 해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도권에서 지방이전한 사람이 지방에 소 재하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초대 또는 이벤트 참여 유도를 하거나 상대적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운영자가 이용료 또는 관람료 등의 감면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보상해 줄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7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 제3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관광 등 시설 설치 등과 신규 또는 지방이전 설치 시의 특례와 인허가 등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 문화·관광 등 시설을 설치하거나문화·관광 등 시설을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 지방이전하려는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인허가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설립과 등록 요건 등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구분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 ③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제9호·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와 「건축법」 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 1. 문화 및 집회시설
- 2. 의료시설
- 3. 교육연구시설
- 4.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서의 문화·예술 진흥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사업의 시행자에게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 흥기금을 보조할 수 있다.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서의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사업의 시행자에게 「관광진흥 개발기금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제34조(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 관련 골프장에 대한 과세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 인근에 소재하는 골프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시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 거주 주민에대한 입장요금의 인하 계획 등을 제출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골프장(이하 "지정골프장"이라 한다)에 대해서는「종합부동산세법」이나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가 특별히 감면되도록하고,「지방세법」 제106조에 따른 과세대

- 상의 구분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토지에 해당하는 구분(분리과세대상)이 적용되도록 한다.
- ②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 제외대상에 관한 같은 법 제177조에도 불구하고 지정골프장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 감면 대상이되도록 한다.
- ③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 거주 주민의 지정골프장에 대한 입장행위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를 면제되도록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율의 적용 문제와 회원제골프장 및 대중제골프장 간의 조세 형평상의 문제 등을 개선하여 골프 대중화를 통한 지방 거주 주민의 건강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지방이전 개인이 여유 있고 재미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세정책상의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 제9장 보칙

제35조(사업비의 지원과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교부 등에 대한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략계획과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 또는 알선하

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가 전략계획과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③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에 대하여는 「지방교부 세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다.
- ④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에 대한 복권수익금의 배분 비율은 「지방재정법」 제8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하여 정할 수 있다.
- 제36조(지방소멸대응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관리 등) ① 이 법에 따라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회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 ③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일반회계와 지방소멸 대응 관련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2. 제6항에 따른 차입금
  - 3. 그 밖의 수입금
  - ④ 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 1. 전략계획이나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의 보조 및

융자

- 2. 제6항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3.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 4. 그 밖에 회계 운용에 관한 경비
- ⑤ 정부는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회계에 전입한다.
- ⑥ 회계의 세출 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으며, 회계는 그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수 있다. 이 경우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해야 한다.
-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에 대한 해당 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할때에 이를 시·도의 지방소멸대응특별회계에 전입하여 시·도지사가 편성·집행하도록 한다.
- ⑧ 시·도지사는 회계의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제7항에 따라 지원된 예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⑨ 시·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지원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① 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 용할 수 있다.

- ①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 ①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 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37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활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원 사업을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전략계획과 부문별 시행계획을 추진하거나 해당 주민에 대한 문화, 관광, 레저와 스포츠 등 시설의 입장료 또는 이용료 등의 감면등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는 데에 사용할 수있다.
-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특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략계획과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할 수 있다.
- 제39조(통합 정보플랫폼의 구축·운영·관리) ① 국가전략계획수립권 자는 지방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하고, 지방에서 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저장·가공·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정 보체계(이하 "통합 정보플랫폼"이라 한다)를 구축·운영·관리한다.
  - 1. 개인, 기업과 대학 등의 지방이전

- 2.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 관련 사업과 기관·단체 등
- 4. 지방에서의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생활과 경제활동
  - 나. 창업과 영업활동ㆍ기업활동
  - 다. 건강 · 의료 · 연금 등 사회복지
  - 라. 교육과 학교
  - 마. 문화 · 관광 · 레저 · 체육
- 5. 지방에서의 생활 및 공간 정보
- ②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는 통합 정보플랫폼을 구축·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제9조제3항 각 호의 자에게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장은 국방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기밀보호가 필요한 사항 등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그 밖에 통합 정보플랫폼의 구축·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0조(청문)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제4 항에 따라 종합정보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 제41조(업무의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지방소멸 대응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등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39조에 따른 통합 정보플랫폼 구축·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 문 기관이나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지방소멸대응지원단의 구성·운영 등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는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제11조제 17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지원단(이하 이 조에서 "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단의 구성·운영을 위한업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총괄하되,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 ②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는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수 있다.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5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의2.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에 따른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 대한 지원
  - ②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 ③ 「문화예술진흥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의2.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제32조에 따른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사업 중 문화예술 분야의 지원 사업
  - ④ 「국민체육진흥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제32조에 따른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사업 중 국민체육 분야의 지원 사업